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4##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면대상 범위 및 이용대상자 확대 등 「중구 추모의 집」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 및 사용료 구 수입 처리규정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용어 일원화(안 제2조)

○ 장사법 제2조제15호 준용

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확대(안 제8조)

○ 제1호 개정, 제4호·제5호 신설: 범위 확대

다. 사용료 구 수입 처리규정 마련(안 제13조)

라.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 및 재지정(안 제14조)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별표3 신설)

마. 사용료 반환규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 제15조 전면 개정 및 별표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 (02)3396-5362, FAX : (02)3396-8732, 메일 :

qweeszzaq@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묘지·화장장·납골시설·산골시설 및 부속된"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상속자를"을 "상속인을"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3조 중 "납골·산골"을 "봉안·자연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사시설"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납골시설"을 "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에 따라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납골시설"을 각각 "장사시설"로, 같은 항 중 "받은 자 및 그상속인"을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골시설"을 "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서"를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사망하여"로, "3일 이내"를 "5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납골시설"을 "장사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3항 후단 중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간내"를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간 내"로, "없는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을조치"를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치"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1항에 의한 때에는 일정 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날"을 "발생한 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장사시설의 확충·유지및 관리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중구 세입으로 처리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천재지변·재해등"을 "천재지변·재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사실"을 "그 사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료등의 반환)"을 "(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환불해야 한다.

제1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③반환에 대한 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부또는"을 "전부 또는"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준수하여야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우에는운영"을 "경우에는 운영"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한보고"를 "관한 보고"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위치(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중구 추모의 집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	

[별표2]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 및 감면 기준

(제13조 및 제14조 관련)

<장사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기 준(1기당)	기본	제14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자
사용료	최초 (15년)	200,000	100,000
	연장·재연장 (1회 연장시 마다)	70,000	35,000

※ 관리비 :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자와 위탁협약 체결시 결정

[별표3]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14조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별표4]

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급기준(제15조 관련)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6개월 이내	75%	5년 초과 ~6년	45%	11년 초과 ~12년	15%
6개월 초과 ~1년	70%	6년 초과 ~7년	40%	12년 초과 ~13년	12%
1년 초과 ~2년	65%	7년 초과 ~8년	35%	13년 초과 ~14년	10%
2년 초과 ~3년	60%	8년 초과 ~9년	30%	14년 초과 ~15년	7%
3년 초과 ~4년	55%	9년 초과 ~10년	25%	15년 초과	5%
4년 초과 ~5년	50%	10년 초과 ~11년	20%		

※ 미사용 시 환불규정: 6개월 이내를 준용함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망장소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 화장증명서 1부,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

No

사용시설	명 칭	서울특별시 중구 추모의 집			
	구 분	공설장사시설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			
	번 호		규 모	1,700기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망장소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허가기간		부터 까지		사용기간	년
허가조건		뒷면기재		교부사유	신규,재교부
구청구분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후면)

(허가조건)

1. 전면에 기재된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합동 안치하거나 집단 매장할 수 있습니다.
2. 구립 장사시설 사용료는 재사용 연장 허가 시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립 장사시설을 사용 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에 의해 반환될 예정입니다.
4.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립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 또는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당해시설의 신.증설.재배치 또는 개선 등과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구립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시설은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	명 칭	서울특별시 중구 추모의 집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	
	허가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항신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사유	주 소 변 경, 상 속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첨부: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 ---.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장·납골시설·산골시설 및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
2.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리거나 매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삭 제>
3.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3. ---------- -------- 사람 또는 -- 상속인을 ----.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3조 (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산골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장사문화개선 등) ------ ---------- ---------- ---------- ----- 봉안·자연장---------- ---------- ----------.
제4조 (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생 략) ②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①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①장사시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이에 따라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납골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제7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장사시설----------.
②납골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자 및 그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장사시설----------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납골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장사시설----------.
1.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1. 서울특별시 ----------

현 행	개 정 안
(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서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사망하여 -- 5일 이내에 ----------
2. 중구에 설치된 분묘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중구에 거주하는 경우	<삭 제>
3. 납골시설을 기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경우.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3. 장사시설---------- ---------- --. ---------- ---------- --.
<신 설>	4.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9조 (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③---------- ---------- ---------- ---------. ------ 이유 없이

현 행	개 정 안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의견제출 기간 내---------- ---------- 없는 것------.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치----- ----------.
제10조 (유골의 수거) ①·② (생략)	제10조 (유골의 수거)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이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 ---------- ---------- ----------. 단, 제1항에 의한 때에는 일정 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 ---------- ---------- -- 발생한 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 (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②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제13조 (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②---------- ----------

현 행	개 정 안
수탁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료등을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사용료 등 ----------.
③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장사시설의 확충·유지및 관리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 중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등) ① ---------- ---------- --- 사용료 등----------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삭 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재해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 천재지변·재해 등 ---------- ----------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에 의하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사실을	②---------- ---------- ---------- 그 사실---

현 행	개 정 안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제15조 (사용료등의 반환) ①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사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환불해야 한다.
<신 설>	②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 설>	③반환에 대한 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관리위탁)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나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위탁) ①---------- ---------- 전부 또는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수탁자 의무) ①·② (생략)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자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지원 등) ①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 (운영지원 등) ①-------- ---------- -------- 경우에는 운영------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제20조 (지도·감독) ①-------- ---------- ---------- 관한 보고---------- 소속 공무원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위치(제4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중구 추모공원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5 효원납골공원	

[별표2]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 기준(제13조 관련)

구분	내용	사용요금	비고
최초 (15년)	일반주민	200,000	
	국가유공자	100,000	
	독립유공자	10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000	
연장시 (5년)	일반주민	70,000	
	국가유공자	35,000	
	독립유공자	35,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000	

※ 관리비 :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자와 위탁협약 체결시 결정

(신 설)

개 정 안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위치(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중구 추모의 집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	

[별표2]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 및 감면 기준

(제13조 및 제14조 관련)

<장사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기 준 (1기당)	기본	제14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자
사용료	최초 (15년)	200,000	100,000
	연장 · 재연장 (1회 연장시 마다)	70,000	35,000

※ 관리비 :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자와 위탁협약 체결시 결정

[별표3]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제14조 관련)

법률 명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현 행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망장소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중구장사등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단법인효원납골공원귀하

첨부 : 화장증명서 1부.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 1통(구청확인용)

개 정 안

[별표4]

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급기준

(제15조 관련)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6개월 이내	75%	5년 초과 ~6년	45%	11년 초과 ~12년	15%
6개월 초과 ~1년	70%	6년 초과 ~7년	40%	12년 초과 ~13년	12%
1년 초과 ~2년	65%	7년 초과 ~8년	35%	13년 초과 ~14년	10%
2년 초과 ~3년	60%	8년 초과 ~9년	30%	14년 초과 ~15년	7%
3년 초과 ~4년	55%	9년 초과 ~10년	25%	15년 초과	5%
4년 초과 ~5년	50%	10년 초과 ~11년	20%		

※ 미사용 시 환불규정: 6개월 이내를 준용함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망장소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귀하

첨부 화장증명서 1부.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증

No.

사용시설	명칭	서울특별시 중구 추모의 집			
	구분	공설납골시설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			
	번호		규도	1,700기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망장소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허가기간		부터 까지	사용기간	년	
허가조건		뒷면기재	교부사유	신규/재교부	
수령구분					

서울특별시중구장사등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단법인효원납골공원(인)

(후면)

(허가조건)

1. 전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합동 안치하거나 집단 매장할 수 있습니다.
2. 구립 장사시설 사용료는 재사용 연장 허가 시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구립 장사시설을 사용 하지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구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구립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 또는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당해시설의 신·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 등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구립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시설은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증

No.

사용시설	명칭	서울특별시 중구 추모의 집			
	구분	공설장사시설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			
	번호		규도	1,700기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망장소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허가기간		부터 까지	사용기간	년	
허가조건		뒷면기재	교부사유	신규/재교부	
수령구분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후면)

(허가조건)

1. 전면에 기재된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합동 안치하거나 집단 매장할 수 있습니다.
2. 구립 장사시설 사용료는 재사용 연장 허가 시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립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에 의해 반환될 예정입니다.**
4.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립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 또는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당해시설의 신·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 등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구립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시설은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	명칭	서울특별시 중구 추모공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함남면 등오리 330-26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신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사유	주소변경, 상속		

서울특별시중구장사등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인)

재단법인효원납골공원

첨부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	명칭	서울특별시 중구 추모의 집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함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신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사유	주소변경, 상속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첨부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